

자격요건 미충족 사유	제출해야 할 자료 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득금액 기준 미충족 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오제출자, 공고 이후 건강보험 자격 변동자 포함)</p>	<p>< 해당유형의 서류 제출 > ※ ①~⑤ 중 복수 해당자는 해당되는 유형의 서류 모두 제출</p> <p>① 공고일(4.30.) 기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 :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부양자의 소득금액증명원('25년)</p> <p>② 공고일(4.30.)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: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('25년)</p> <p>③ 종합소득세 신고자(프리랜서 등) :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본인 또는 건강보험상 부양자의 소득금액증명원('25년)</p> <p>④ 취업 등으로 '25년 소득과 공고일(4.30.) 기준 소득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: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(1),(2) 서류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공적 서류 제출 (1)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'26.2~4월 포함) - 발급처 : 근무 회사 ※ 직인 필수, 직인 날인 없는 급여명세서 불인정 (2)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'26.2~4월 포함) : 발급처 : 해당 소득을 지급한 업체</p> <p>⑤ 공고 이후 건강보험 가구원수가 변동되어 보완 필요할 경우 :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변동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※ 발급일자 2026. 7. 10. ~ 2026. 7. 19. (서류 보완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) ※ 소득금액 기준은 공고일(4.30.)로, 공고일 이후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로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공고일에 속해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제출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및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는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임대차 건물'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-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(임대업, 숙박 서비스 등)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-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"전체페이지" 첨부 ※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해야함 - 재계약인 경우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된 최초 계약서 첨부 <p>※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2026. 7. 10. ~ 2026. 7. 19. (서류 보완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)</p>

자격요건 미충족 사유	제출해야 할 자료 내용
<p>고시원, 세어하우스 등 (필수기재 정보 및 서류 누락) ①+② 모두 제출</p>	<p>① 입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(없는 경우) 실거주확인서 또는 기존 서류에 필수정보 기재 후 임대인, 임차인 상호 날인 ※ 필수정보 : 임대인(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/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소재지), 임차인(성명 및 생년월일), 임대차 계약기간, 보증금, 월세, 소재지(임주자의 기존 주소가 아닌, 계약 대상 주택의 주소, 소재지에는 반드시 호수 포함)</p> <p>②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단, 일반적인 전대차 계약인 경우 3가지 제출 - 전대차계약서 -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</p>
<p>첨부 파일 오류 또는 계약서 등 필수 서류 일부분 첨부</p>	<p>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“전체 페이지” 첨부 1장인 경우 JPG 가능(글자판독 가능 여부, 파일 열리는지 꼭 확인, 암호화된 경우 암호 기재 또는 암호 해제 후 첨부)</p> <p>※ 임대인, 임차인, 주택 소재지, 임대차 계약기간, 보증금, 월세, 확정일자 등을 기 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또는 서명·날인이 있어야 함 (서류 일부분 잘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)</p>
<p>가족관계증명서 보완제출</p>	<p>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발급 ※ 발급일자 2026. 7. 10. ~ 2026. 7. 19. (서류 보완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)</p>
<p>일반재산* 1억 3천만원 초과자 (* 토지, 건축물, 임차보증금, 자동차)</p>	<p>- 해당 물건 매각 및 소유권 이전 확인 서류 (예시)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, 소유권 변동확인, 인터넷등기소), 과세표준액이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</p> <p>※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2026. 7. 10. ~ 2026. 7. 19. (서류 보완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)</p>
<p>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</p>	<p>- 소유권 이전(매각)된 자동차등록원부(갑)(정부24) 또는 - 폐차인수증명서(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)</p>

자격요건 미충족 사유	제출해야 할 자료 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체확인증 보완 제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'26년 2월~ 4월)간 월세 납부한 계좌이체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이체확인증 : 이체일자(연월일),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(월세를 이체한 사람과 임차인이 같지 않아도 괜찮음) -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: 임대인·임차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서명 또는 도장 날인, 납부내역(기간, 방법, 금액)등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([서식5] 월차임 납부확인서 참조) ※ 월차임납부확인서 상의 임대인 서명 및 날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서명 및 날인과 일치해야 합니다. · 잔금(보증금) 납부한 영수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- 신청접수 종료일(5/19) 이내로 잔금 납부한 이체내역 첨부 ·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,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제출 가능 ※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2026. 7. 10. ~ 2026. 7. 19. (서류 보완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택 소유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물건 매각 및 소유권 이전 확인 서류 (예시) 건물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, 소유권 변동확인, 인터넷등기소) ※ 매매계약서만 제출 시 이의신청 반영 불가 - 오피스텔의 경우 영업용 오피스텔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(예시) 해당 주소지로 된 사업자등록증, 용도가 사무실 등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등 ※ 주택 소유 관련 문의사항 : ☎ 02-2133-7704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양권, 입주권 소지자</p>	<p>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사본</p> <p>※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소유 관련 문의사항 : ☎ 02-2133-7704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시 미거주 (조사시점 서울시 미거주자)</p>	<p>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(정부24시, 가까운 동주민센터)</p> <p>※ 초본상 신청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</p> <p>※ 발급일자 2026. 7. 10. ~ 2026. 7. 19. (서류 보완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)</p>

자격요건 미충족 사유	제출해야 할 자료 내용
<p>공공임대주택 거주자</p>	<p>계약(해약)사실확인원(계약사실, 종료, 해지여부 등 확인) ※ LH : ☎ 1600-1004 / SH : ☎ 1600-3456 를 통해 발급 가능 -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(계약자)인 경우 : 신청자 본인의 계약(해약)사실확인원 제출 -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(계약자)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: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해당 주소지 임차인(계약자)의 계약(해약)사실확인원 함께 제출</p>
<p>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</p>	<p>청년수당 취소 신청 화면 캡처 등 수혜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신청 전 타사업 지원이 종료되어 5월 미수급일 경우 신청 가능) ※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(☎ 1566-3344)</p>
<p>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자치구 청년월세 등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</p>	<p>취소 신청 화면 캡처 등 현재 수혜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신청 전 타사업 지원이 종료되어 5월 미수급일 경우 신청 가능) (국토부 ☎ 1599-0001, 관악구 ☎ 02-879-5921, 광진구 ☎ 02-351-9752, 동작구 ☎ 02-820-9306, 은평구 ☎ 02-351-6885)</p>
<p>기 타</p>	<p>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</p>

※ 전체 발급서류는 2026. 7. 10. ~ 2026. 7. 19. (서류 보완 및 이의신청 기간 내) 발급분만 인정

※ 청년 1인 가구 유형은 임차보증금, 월세액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본인의 구간(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포함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